

의안번호	2115341
의 퇴 인	이명수의원
회 답 일	2022.01.11.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선거법원 설치(안 제3조)

- 선거법원은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추가재정소요 : 향후 5년 간 총 362억원, 연평균 72억원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평균
공사비 등	13,363	13,363	-	-	-	26,727	5,345
인건비 등	-	-	3,172	3,089	3,185	9,446	1,889
합계	13,363	13,363	3,172	3,089	3,185	36,173	7,23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1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3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3
2. 청사 증축 공사비 등	4
3. 공무원 인건비 등	5
4. 추계 결과	6

일러두기

-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선거법원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62억원(연평균 72억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평균
공사비 등	13,363	13,363	—	—	—	26,727	5,345
인건비 등	—	—	3,172	3,089	3,185	9,446	1,889
합계	13,363	13,363	3,172	3,089	3,185	36,173	7,235

주: 청사 건립비용은 2023년과 2024년에 동일한 비율로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- 선거법원 설치(안 제3조)
- 선거법원은 「공직선거법」에서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- 선거법원에서 심판하는 사건은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정치자금법」을 위반하는 사건으로 가정

[표 2]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정치자금법」 형사공판 1심 사건 : 2018~2020년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8	2019	2020	평균
공직선거법 위반	864	872	622	786
정치자금법 위반	57	83	47	62
합계	921	955	669	84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판사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대상 제외

- 선거법원이 설치되는 경우 판사가 증원될 수 있으나 증원 여부는 「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」의 개정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므로, 이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
□ 선거법원의 공무원 수 및 청사 규모는 특허법원의 공무원 수 및 청사 규모와 비교하여 추정

- 특허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99명(2021년 기준)이고, 사건 수는 952건(2018~2020년 평균)이고, 선거법원의 사건 수는 848건(2018~2020년 평균)이므로 정원과 사건 수가 비례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선거법원의 공무원 정원은 88명으로 추정
 - 선거법원 신설로 선거에 관한 사건(이하 “선거사건”이라 한다)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 관련 인력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
 - 선거법원이 신설되는 경우 사무국도 같이 설치되므로 이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만 추계
 - ※ 대법원은 사무국을 총 40명(1국2과) 규모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함
- 특허법원의 1인당 건물연면적은 98.63㎡로 이를 선거법원의 정원인 88명을 곱하면 선거법원의 건물연면적은 8679.7㎡임
 - 특허법원은 대전가정법원과 동일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선거법원도 그 예를 참고하여 서울 소재 법원의 청사를 증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 부칙에서 법의 시행일을 2025년 3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2023년 및 2024년에 청사를 증축하고, 2025년부터 법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□ 따라서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기간을 추계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는 선거법원 설치에 따른 청사 증축을 위한 공사비 등과 증원인원 인건비 등임

<비용추계 산식>

$$\text{추가재정소요} = \text{청사 증축 공사비 등(A)}^{1)} + \text{공무원 인건비 등(B)}^{2)}$$

$$\text{A) 공사비 등} = \text{공사비}^{1)} + \text{부대경비}^{2)}$$

$$1) \text{ 공사비}_{2023} = \text{공사면적}^{a)} \times \text{공사단가}_{2023}^{b)}$$

a) 공사면적: 8679.7m²(특허법원 1인당 건물연면적 98.63m²에 선거법원의 정원 88명을 곱한 값)

b) 공사단가₂₀₂₃: 2,916,286원/m²(2021년 공사비 단가(2,712,166원, 조달청)에 공사비지수 2016~2021년 평균상승률(3.7%)을 적용한 값)

$$2) \text{ 부대경비} = \text{공사비}_{2023} \times (\text{설계비 효율}^{a)} + \text{감리비 효율}^{b)} + \text{시설부대비 효율}^{c)})$$

a,b,c) 설계비 효율 4.01%, 감리비 효율 1.34%, 시설부대비 효율 0.23%

※ 효율은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참고

$$\text{B) 인건비 등} = \text{공무원 보수}^{1)} + \text{기관부담금}^{2)} + \text{기본경비}^{3)} + \text{자산취득비}^{4)}$$

$$1) \text{ 공무원 보수} = \sum_t \sum_i [\text{증원인원}_{it}^{a)} \times 1\text{인당 연봉액}_{it}^{b)}]$$

이 때, t 는 추계연도(2025~2027년), i 는 직급의 종류

a) 선거법원(사무국) 증원인원은 40명(3급 1명, 4급 2명, 5급 4명, 6급 6명, 7급 4명, 8급 9명, 9급 14명)

$$b) 1\text{인당 연봉액}_{it} = 1\text{인당 연봉액}_{i(t-1)} \times (1 + \alpha_t)$$

이 때, t 는 추계연도, 1인당 인건비 _{$i(t-1)$} 는 공무원 직급별 1인당 인건비(각종 수당 등 포함),

α 는 명목임금상승률(국회예산정책처 전망)

$$2) \text{ 기관부담금} = \sum_t [\text{공무원 보수}_t \times \text{기관부담금 비율}^{a)}]$$

이 때, t 는 추계연도(2025~2027년)

a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(건강보험/장기요양보험/공무원연금) 적용

$$3) \text{ 기본경비} = \sum_t [\text{공무원 보수}_t \times \text{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}^{a)}]$$

이 때, t 는 추계연도(2025~2027년)

a) 2022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(대법원 6.7%) 비율 적용

4) 자산취득비_{t=2025} = 인원_{t=2025}^{a)} × 1인당 자산취득비_{t=2025}^{b)}

※ 자산취득은 2025년 설치 첫 해만 별도 추계하며 이후 기간은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
a) 총 40명

b)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값(446만원) 적용

2. 청사 증축 공사비 등

□ 청사 증축에 따른 공사비는 증축면적에 단위 면적당 공사비(조달청의 「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」 참고)를 곱하여 추정

- 앞선 전제에서 선거법원의 건물연면적을 8679.7㎡로 가정하였음¹⁾
- 조달청 「주요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」에 따른 공사비 단가는 2021년 기준 2,712,166원/㎡인데, 앞에서 필요한 건물연면적을 8679.7㎡로 가정하였으므로 총 공사비는 235억 4,084만원(2021년 기준)으로 추정됨
- 이 값에 최근 5년간 공사비지수 평균상승률(3.7%)²⁾을 반영한 2023년 공사비는 253억 1,255만원으로 추정됨

□ 부대경비는 공사비에 기획재정부 「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추정

- 「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른 공종별 요율은 설계비: 3.96%, 감리비: 1.32%, 시설부대비: 0.23%임³⁾
- 따라서 공사비에 부대경비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등은 다음의 표와 같음

[표 3] 선거법원 청사 공사비 등(2023년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요율	비용
공사비	—	25,313
설계비	4.01%	1,016
감리비	1.34%	340
시설부대비	0.23%	58
합계	—	26,72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8679.7㎡ = 98.63㎡/명(특허법원 직원 1명당 건물연면적) × 88명(선거법원 정원)

2) 2015~2020년도 12월 기준

3) 업무시설이므로 제2종(보통), 중급 요율 적용

3. 공무원 인건비 등

- 증원인원 인건비 등과 관련된 비용은 공무원 보수, 기관부담금, 사업비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임
- 앞선 전제에서 선거법원 설치에 따라 증원하는 공무원 수는 사무국 직원 수로 가정하였음
 - 사무국 구성은 1국 2과 40명(대법원 제출 의견)으로 가정함
 - 증원인원에 대한 기준 보수는 직급별 증원인원 수에 1인당 연봉액을 곱하여 산정
 - 증원인원 40명에 대한 직급별 인원은 「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」(대법원규칙 제3012호)을 참고하였음

[표 4] 증원인원에 대한 기준 보수: 202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직급별 보수							
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합계
1인당 연봉액(A)	107	95	78	66	57	48	41	—
증원인원(B)	1	2	4	6	4	9	14	40
보수(A×B)	107	190	311	397	226	428	571	2,231

주: 1) 4급 20호봉, 5급 18호봉, 8급 12호봉 기준(성과급 적용되는 호봉 기준)

2)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, 성과급(A등급), 시간외 근무수당(5급 이하, 10시간)이 포함된 금액. 다만, 6급 이하는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도 포함

자료: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수당규정을 참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⁴⁾, 기관부담금 비율⁵⁾, 자산취득비⁶⁾ 및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6.7%)을 반영한 인건비 등은 다

4) 명목임금상승률

(단위: %)

구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명목임금상승률	2.6	2.8	2.9	3.0	3.1	3.1

※ 호봉상승·처우개선을 감안한 공무원 보수 상승률이 중장기적으로 명목임금상승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무원 보수 추계 시 명목임금상승률 적용

5) 기관부담금 비율

(단위: %)

구분	2025년	2026년	2027년
건강보험	3.90	4.00	4.00
장기요양보험	0.449	0.461	0.461
공무원연금	9.00	9.00	9.00
합 계	13.35	13.46	13.46

음의 표와 같음

[표 5] 선거법원 증원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: 2025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 ⁷⁾	2026	2027	합계
보수	2,494	2,571	2,651	7,715
기관부담금	333	346	357	1,036
기본경비	167	172	178	517
자산취득비	178	—	—	178
합계	3,172	3,089	3,185	9,44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. 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선거법원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362억원(연평균 72억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3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합계	평균
공사비 등	13,363	13,363	—	—	—	26,727	5,345
인건비 등	—	—	3,172	3,089	3,185	9,446	1,889
합계	13,363	13,363	3,172	3,089	3,185	36,173	7,235

주: 청사 건립비용은 2023년과 2024년에 동일한 비율로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6) 국회예산정책처가 산출한 2025년 자산취득비는 1인당 446만원으로, 동년도에 일괄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
7) 개정안 부칙에서 법의 시행일을 2025년 3월로 규정하고 있으나, 직원 채용 및 운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전체기간에 대하여 추계

국회예산정책처	행정비용추계과
과장	임준기
추계세제분석관	이우영
연락처	02-6788-4664
	herr@na.go.kr
